

2023. 3. 20(월). 10:00  
제2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도시교통위원회  
전문위원

#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김동훈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3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시 관내 설치 된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(안 제3조)
- 다.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4조)
- 라. 시설이용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5조)
- 마. 물놀이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6조)
- 바.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덧붙임

-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 및 시행규칙」
  -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
- 나. 물놀이장 운영 현황 : 덧붙임
- 다. 입법예고 결과( '23. 3. 8. ~ 3. 14.) 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우리시 관내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물놀이장은 총 23개소이며, 년 이용객은 총 17만 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,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마다 불편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.
- 본 조례는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제한, 시설관리,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2023년 3월 15일  
도시교통전문위원회 윤 선 기

**☑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**

제21조(보험가입)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, 가입시기, 보상한도액,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5. 30.>

**☑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**

제16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5. 15., 2023. 2. 6.>

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2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5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
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
2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
3.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
4.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☑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**

제89조의3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·관리 기준)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. <개정 2019. 10. 17.>

## 붙임2

## 물놀이장 운영 현황

2023. 3. 9.기준

연번	시 설 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시설종류	설치년도	관리부서
1	와부 물놀이장	와부읍 덕소리 600-31번지 일원	523	바닥분수, 벽천분수, 계류시설, 조합놀이대	2010년	공원관리과 수경시설팀 (☎590-2868)
2	화도(창현) 물놀이장	화도읍 창현리 744번지 일원	478	조합놀이대, 바닥분수	2010년	상동
3	화도(마석) 물놀이장	화도읍 마석우리 568번지 일원	570	바닥분수, 계류시설, 조합놀이대	2009년	상동
4	화도(목현) 물놀이장	화도읍 목현리 456-8번지 일원	388	바닥분수, 벽천분수, 조합놀이대	2015년	상동
5	진건 물놀이장	진건읍 사능리 645-7번지 일원	567	바닥분수, 계류시설, 조합놀이대	2009년	상동
6	호평 물놀이장	호평동 647번지 일원	655	바닥분수, 벽천분수, 계류시설, 조합놀이대	2010년	상동
7	평내 물놀이장	평내동 585-4번지 일원	886	바닥분수, 벽천분수, 계류시설, 조합놀이대	2008년	상동

8	금곡 물놀이장	금곡동 656번지 일원	820	바닥분수, 벽천분수, 계류시설, 조합놀이대	2009년	공원관리과 수경시설팀 (☎590-2868)
9	약대울 물놀이장	평내동 473-2번지 일원	995	바닥분수, 벽천분수, 계류시설, 조합놀이대	2016년	상동
10	광암호수공원 물놀이장	화도읍 차산리 84-1번지 일원	995	우산물놀이대, 바닥분수	2013년	상동
11	진접택지 물놀이장	진접읍 금곡리 1037-18번지 일원	323	조합놀이대	2010년	상동
12	진접(장현) 물놀이장	진접읍 장현리 677-2번지 일원	454	조합놀이대, 바닥분수	2009년	상동
13	오남근린공원 물놀이장	오남읍 오남리 884-19번지 일원	428	우산물놀이대, 바닥분수	2010년	상동
14	청학근린공원 물놀이장	별내면 청학리 410번지 일원	624	조합놀이대, 바닥분수	2010년	상동
15	퇴계원(뱅이) 물놀이장	퇴계원읍 퇴계원리 369-7 일원	245	조합놀이대, 바닥분수, 계류시설	2013년	상동

16	별내(체육공원) 물놀이장	별내동 861번지 일원	598	조합놀이대	2014년	상동
17	다산지금 물놀이장	다산동 6236-1번지 일원	600	조합놀이대, 무지개물놀이대, 우산물놀이대	2018년	공원관리과 수경시설팀 (☎590-2868)
18	다산진건 물놀이장	다산동 6022번지 일원	996	조합놀이대, 워터건, 바닥분수	2018년	상동
19	진접(장승) 물놀이장	진접읍 장현리 45-24번지 일원	745	바닥분수, 벽천분수, 계류시설, 체험시설	2019년	상동
20	지금지구 어린이3호공원 물놀이장	다산동3074-1	516	조합놀이대, 바닥분수	2020년	상동
21	한강시민공원(삼패지구 물놀이장)	삼패동 630번지(한강)	1,382	실개천	2010년	공원조성과 한강공원팀 (☎590-8633)
22	한강시민공원(도농지구 물놀이장)	다산동 4321-10(왕숙천)	1,932	바닥분수 실개천	2010년	상동
23	화도푸른물센터 물놀이장	화도읍 금남리 580	1,288	바닥분수	2007년	하수처리과 시설관리팀 (☎590-8227)